#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

< 전자금융거래법령 등 개정방향 >

2020. 7.

금 융 위 원 회

# 목 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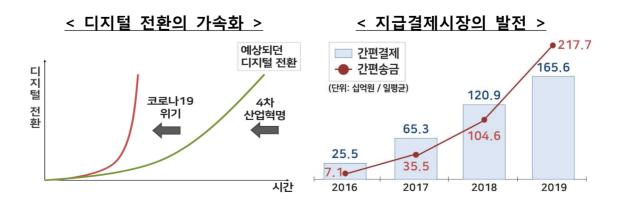
Ⅰ. 추진 배경1
1. 왜 디지털금융인가?1
2. 국내 디지털금융의 현 주소 3
Ⅱ. 추진 과제6
1. 혁신적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7
2. 디지털금융 이용자 보호체계 확립 15
3. 디지털 금융거래 기반 구축 19
4. 디지털 금융보안 강화 25
Ⅲ. 기대 효과29
Ⅳ. 향후 추진계획 31

# Ⅰ. 추진 배경

# 1. 왜 디지털금융인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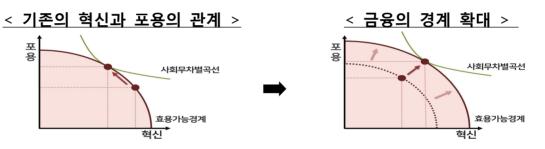
# (1) 금융의 디지털 전환(Digital Transformation)

- □ 4차 산업혁명, 코로나19 등으로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
  -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빅데이터·AI·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 도입으로 금융산업의 구조·Player 등이 근본적으로 변화
    - \* 기존 금융회사의 대내외 디지털화 촉진, 핀테크 스타트업의 창업 활성화, 디지털 신기술 기반의 Big tech 및 플랫폼 사업자의 금융분야 진출 등
  -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거래 선호 경향, 금융회사의 재택·유연근무 확대 등은 금융의 디지털·비대면화를 심화
- □ '디지털금융'은 대표적 비대면 산업으로서 전자적 방식의 결제· 송금·중개 등에서 신기술과 결합한 금융플랫폼\*으로 진화 중
  - \* 온라인 포털('거래 플랫폼')이나 기술개발 프레임워크('혁신 플랫폼') 등을 통해 다양한 이용자 그룹의 상호작용이 가능
  - 결제·송금의 간편·다양화, 인증·신원확인 기술의 발전, 금융 플랫폼 구축 경쟁 등을 통해 이용자·거래 규모가 크게 성장
  - 이용자 네트워크,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Player들이 '디지털금융'과 '데이터경제'의 연계를 통해 경쟁·혁신을 촉진



# (2) 디지털금융의 중요성

- □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은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뉴딜을 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적 포용금융이 가능
- 디지털금융은 포스트 코로나의 주요 산업 분야로서 ICT 등 연관 산업의 자극제\*로 작용하여 선도형 디지털 경제에 기여
  - \* 글로벌 금융-ICT산업간 M&A : `09년 223건 → `16년 472건(112%↑)
- ② 디지털 신기술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으로 금융의 경계 (Frontier)가 확대되어 혁신과 포용은 함께 달성 가능
  - \* "핀테크 시대의 도래로 포용금융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"(BIS 부총재, `18.11.)



- ③ AI·인증기술 등을 활용한 맞춤형 금융서비스 개발 등으로 국민들께서 혁신의 혜택을 직접적이고도 빠르게 체감 가능
- □ EU 등 주요 국가는 이러한 디지털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앞다투어 법·제도를 정비
  - (지급결제) EU「지급결제산업지침」개정(Payment Services Directive 2, PSD2)(`18.)
    \* (英) Payment Services Regulations(`17.) (싱가포르) Payment Services Act(`20.)
  - ② (인증) EU「전자적 신원확인 및 인증 등에 관한 법률(eIDAS)」제정(`16.)
  - ❸ (플랫폼) EU「온라인 플랫폼의 공정성·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률」제정(20.)
- □ 그러나, 빠르게 발전하는 글로벌 디지털금융의 흐름에도 불구,
  - 국내 디지털금융을 규율하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은 '06년 제정 (07년 시행) 후 큰 변화 없이<sup>\*</sup>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체계가 지속
    - \* 전산사고 등으로 인해 금융보안 관련 세부 규정만 10여 차례 개정

# 2. 국내 디지털금융의 현 주소

# (1) [산업] 글로벌 수준의 규제 혁신 필요

- □ 現 전자금융업 체계는 혁신적인 결제서비스의 제도권 수용을 어렵게 하고 진입비용과 규제 불균형을 초래
  - 제정 당시('06.)의 세분화(7개)된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新융·복합서비스가 곤란
    - \* EU는 PSD 개정(PSD2)을 통해 MyPayment와 MyData를 새로이 도입(18.)
  - 디지털 리스크 등은 영업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짐에도 획일적인 진입 기준을 설정하여 소규모 혁신사업자 진입도 제약

### < 전자금융산업 자본금 비교 >

### < 국가별 유니콘 보유 현황(19.) >



- □ 해외 주요국 중 신용카드 이용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서 다양한 디지털 결제수단의 혁신에 어려움
  - 디지털금융 이용자의 **다양한 수요**에 맞는 '계좌 기반의 선· 직불 결제'와 '신용 기반의 후불 결제'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

### < 지급수단 중 신용카드 이용비중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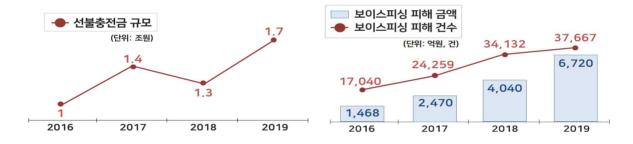


# (2) [이용자] 거래규모 확대로 이용자 보호 시급

- □ 디지털금융 거래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
-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고객자금(선불충전금)이 빠르게 증가 ('16년 1조원 → '19년 1.7조원)

※ (참고) BIS는 결제분야 빅테크기업이 보유한 고객자금(Float: 선불충전금)이 해당 기업의 내부자금(Captive Funding)화되고 있음을 지적(`18.12월)

- ② 금융플랫폼에서 나타타는 사업자 간 연계·제휴 영업 및 AI 등 디지털 신기술 활용 등에 따른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 필요
- ③ 디지털금융의 확산과 더불어 전자금융사고, 보이스피싱 등의 가능성이 높아집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역할이 더욱 중요



# (3) [인프라] 새로운 기술과 환경을 수용하는 체계 구축

- □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 맞춰 설계된 금융 인프라·제도가 디지털 금융의 혁신과 안정에 한계로 작용
- 공인인증서 폐지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인증수단과 대면을 전제한 신원확인 제도 등이 인증서비스 혁신의 장애 요인
  - \* `19년 핀테크 규제개선 건의 188건 중 인증 관련 건의가 32건(17%)를 차지
- ② 참여기관간 협약으로 실시 중인 오픈뱅킹 및 청산 제도의 안정·확장적인 운영을 위한 법·제도적인 뒷받침\*이 필요
  - \* IMF·BIS는 오픈뱅킹 및 금융시장 인프라의 법적 근거 필요성을 지속 제기

- ③ 해외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Big tech\*의 금융업 진출\*\*에 대응하는 관리체계도 필요
  - \* ICT·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확보한 이용자 네트워크와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금융업에 진출하려는 기업 집단(Google, Amazon, Facebook, Apple, Alibaba 등)
  - \*\* Alibaba 자회사인 Ant Financial의 MMF 판매, Amazon의 Pay-Lending 서비스 등

# (4) [보안] 디지털 금융리스크 대응체계 강화 필요

- □ 클라우드·빅데이터·AI 등 디지털 신기술 활용 확대 등에 따라 금융보안(Cyber Security)의 금융시스템적 중요성이 증대
  - \* (G20, `17.8./IMF, `18.6.) "사이버위협의 증가에 대한 금융분야의 대응이 매우 중요"
  - 금융권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범위와 유형이 확대되고 있으며, 클라우드 등 아웃소싱으로 제3자 리스크(Third Party Risk)도 심화
    - \* 금융권 사이버공격 대응건수 : (`16.) 37만건 → (`19.) 275만건
  - ② 신종 사이버 공격, 보이스피싱 등 새로운 디지털금융 리스크로 정보기술(IT) 부문을 넘어 전사적(Enterprise-wide) 대응이 필요
    - 특히, 코로나19 등으로 업무지속계획(BCP, Business Continuity Plan), 망분리 등 기존 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
  - ③ 최근 오픈뱅킹 등을 통해 핀테크·Big tech 등 다양한 참여자가 금융공동망을 이용하는 등 디지털 리스크의 상호연계성이 확대
  - 4 인간안보(Human Security)의 주요 요소로서 국민의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금융보안에 대한 민·관의 체계적 대응도 중요
  - →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, 데이터3법 개정에 이은 「전자금융거래법, 개정을 통해 디지털금융의 법제도 정비를 완결
    - <sup>1</sup>국민의 경제·금융생활의 편의·안전성을 높이고, <sup>2</sup>금융산업의 혁신·경쟁을 촉진하며, <sup>3</sup>디지털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할 필요



"디지털금융 산업·거래를 활성화하고 이용자보호와 금융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."

# Ⅰ. 혁신적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

- ① MyPayment ·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신설
- ② 전자금융업종 기능별 통합 및 간소화
- ③ 최소자본금 등 진입규제 합리화
- ④ 소액 후불결제, 충전한도 상향 등 영업범위 확대

# Ⅱ. 디지털금융이용자보호체계확립

- ① 디지털금융 이용자 자금 보호 강화
- ② 금융플랫폼 등 영업행위 규율체계 마련
- ③ 전자금융사고 책임범위 확대
- ④ 합병 및 영업양도 기준 마련

이용자





# Ⅲ. 디지털금용거래기반구축

- ① 오픈뱅킹 및 디지털 지급거래청산 제도화
- ② 금융분야 인증 · 신원확인 제도 개선
- ③ 전자금융거래법 적용대상 명확화
- ④ Big tech의 금융업 진출 대비 관리체계 마련

# <sup>「전 자 금 융 거 래 법</sup>

개

정

# IV. 디지털 금융보안 강화

- ① 디지털 리스크 관리·감독 선진화
- ② 금융보안 관련 민간 거버넌스 강화
- ③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디지털 전환 지원
- ④ 금융분야 사이버 안보 관리체계 구축

# 제1과제

# [산업] 혁신적 디지털 금융산업[Players] 육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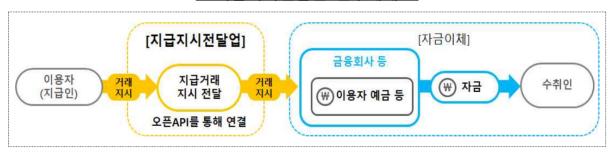
혁신적 핀테크·금융회사 등의 디지털 금융산업 진입을 촉진하고 운영의 폭을 넓혀 지속 성장하는 디지털금융 생태계를 구축

# 1. 지급지시전달업(MyPayment) ·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신설

# (1) '지급지시전달업(MyPayment)' 도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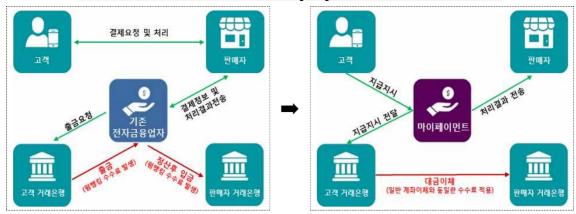
- □ (내용) 이용자의 <u>결제·송금 지시(지급지시)를 받아, 금융회사 등이</u> 이체를 실시하도록 전달하는 업종 신설(EU PSD2, '18.1월 도입)
  - ▶ 지급지시전달업자는 고객계좌를 보유하지 않는 대신, 고객의 동의를 받아 결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고객의 금융계좌 정보에 대해 접근권을 보유

### < 지급지시전달업 업무체계 >



- □ 핀테크·금융회사 등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해 전자금융산업에 가장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스몰라이센스 역할
  - 고객자금의 직접 보유 및 정산 관여가 없으므로 자본금 등에 대해 낮은 수준의 규제 적용이 가능
- □ (효과)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따른 이용자 편의 증대가 기대
- 전자금융업자를 거치지 않고 **금융회사간 직접 송금·결제**가 가능하여 전자상거래 등의 **수수료·거래리스크**의 **절감 가능**

< 전자상거래시 처리과정 : MyPayment 도입 전후 비교>



- ② 이용자 입장에서 은행 등에 자금을 계속 보관(이자 수취)하면서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도 함께 이용 가능
- ③ <u>마이데이터(MyData)</u> 등과 연계로 조회·이체·결제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에 대해 고도화된 종합 디지털금융 서비스가 창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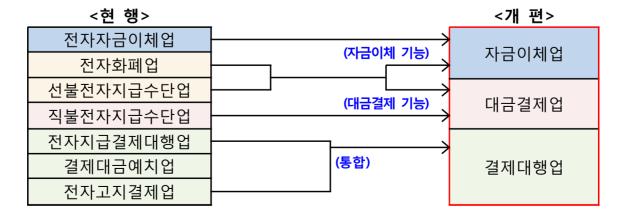
# (2) '종합지급결제사업자' 지정

- □ (목적) 디지털금융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<sup>\*</sup> 도입
  - \* (해외사례) EU·영국: 'Electronic Money Institution', 싱가포르: 'Payment Institution' 등
  - 하나의 금융 플랫폼을 통해 간편결제·송금 외에도 계좌 기반의 다양한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One-stop으로 제공
    - ▶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**금융결제망에 참가**하여 <u>결제기능을 수행하는</u> <u>계좌(Payment Account) 발급 및 관리 업무가 가능</u>하도록 제도 마련
- □ (업무) 국민들께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반 전자금융업자(대금결제업·자금이체업 등) 대비 업무범위를 확대
  - 단일 라이센스로 자금이체업·대금결제업·결제대행업 등 모든 전자금융업의 업무를 영위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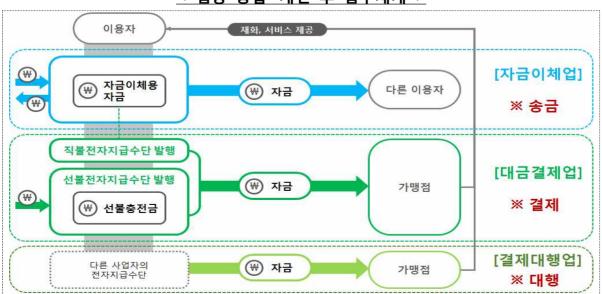
- ② 사업자가 이용자의 계좌를 직접 보유할 수 있어 <u>급여 이체</u>, 카드대금·보험료 납입 등 계좌 관리 가능(예대 업무 불가)
  - \* 현재 전자금융업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 연계 계좌만 개설 가능
  - ▶ (이용자 측면) 은행 계좌를 이용하지 않아도 입·출금 이체, 법인 지급 결제 등 은행 수준의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가능
  - ▶ (사업자 측면) 금융결제망 참가기관(은행 등)의 이체기능을 지원받는 오픈뱅킹 단계를 넘어서 <u>금융결제망에 참가</u> 가능
- ❸ 일반 전자금융업자 대비 <u>대금결제·자금이체의 한도 상향</u> 등 → 플랫폼 이용자의 다양한 금융거래 수요에 대응
- □ (관리감독) 전자금융업자의 신청을 받아 <u>금융위가 지정</u>하고,대형 사업자로서 금융시스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감독
  - 일반 전자금융업자 대비 강화된 건전성·이용자보호 등 규제
- ② 금융회사 수준의 신원확인, 자금세탁방지(AML)·보이스피싱 등 규제
- ③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분한 자기자본(200억원), 전산역량 요건 등
- ◆ 금융안정,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

# 2. 전자금융업종 기능별 통합·간소화 (現 7개 → 3개)

□ 서비스 간 융·복합이 활성화되는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과도하게 세분화된 업종을 기능별(결제·송금·대행)로 통합·단순화



- ① (자금이체업)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서 <u>전자적인 장치를</u> 통해 자금을 이동 (현재의 전자자금이체업, 선불업)
  - 이용자 자금에 대한 입금·출금 이체 권한을 부여하여 간편 송금 서비스의 혁신을 유도
  - 송금 절차에 직접 관여\*하면서 대금결제 없이도 자금이동\*\*이 가능하므로 자금세탁방지·이용자보호 등의 규제는 강화
    - \* (지급지시전달업) 자금이동 지시가 가능하나 송금 절차에 직접 개입 불가
  - \*\* (대금결제업) 재화・용역의 대가지급을 전제로 한 결제자금 이동만 가능
- ② (대금결제업) 이용자와 가맹점 사이에서 <u>디지털 지급수단을</u> 통해 재화·용역의 대가를 결제 (현재의 선·직불업, 전자화폐업)
  - 선·직불 등 다양한 디지털 지급수단의 발행·관리가 가능한 업종으로서 혁신적인 결제서비스 개발을 촉진
- ③ (결제대행업) 결제·정산·예치·고지 등 디지털금융의 <u>결제에</u> 수반되는 업무 전반에 대한 대행 서비스\*를 제공 (현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, 결제대금예치업, 전자고지결제업)
  - \* (예) 가맹점과 금융회사 사이에서 결제대행(PG)업을 기본적으로 영위하면서 이용자 요청에 따라 대금 예치(Escrow)와 대금 고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



< 업종 통합·개편 후 업무체계 >

□ (리스크 관리) 기능별 개편으로 <u>업종별 리스크 수준이 차등화</u> 되어 자본금 등 진입·영업·보안 규제의 합리적인 설계가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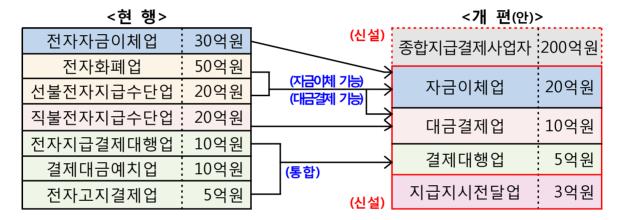
### < 업종 개편에 따른 단계별 리스크 수준 >

구 분	규제수준	보이스피싱 • 자금세탁방지	이용자 보호	상호간 호환	금융보안
종합지급결제업		본인확인 (强)	이용자 보호 (强)	거래표준 要 (强)	
자금이체업	높음 ↑	본인확인 (中)	이용자 보호 (中)	거래표준 要 (中)	7 ⋿
대금결제업	(단계적)	본인확인 (弱)	이용자 보호 (弱)	거래표준 要 (弱)	공통
결제대행업	↓ 낮음	-	가맹점 보호 (결제 보장)	거래표준 要 (弱)	적용
지급지시전달업		-	-	-	

- (신원확인)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계좌 기반의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금융회사 수준의 신원확인 의무를 부과
  - **자금이체업자**는 **은행의 자금세탁방지 기능**을 활용할 수 있으며, **대금결제업자**는 **송금이 불가능**한 점을 감안, 규제를 차등 적용
  - \* (자금이체업) 신원확인의 선택적 적용, (대금결제업) 휴대폰 본인확인 등으로 갈음
- ② (이용자 보호)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자금이체업자는 유동성 확보를 통해 간편송금 수요에 즉시 대응하도록 <u>이용자 자금 전부를 보호</u>
  - **대금결제업**의 **이용자 자금**은 **결제 대기자금**으로서 보관되며 즉시 인출의 위험이 작아 **일부에 대해서만 보호 의무**\*를 부과
  - \* 미국·일본 등은 대금결제업에 대해 이용자 자금의 50%만 보호 의무를 부과
- ❸ (금융보안) 원칙적으로 공통 적용하나, 인력·거래규모, 영업범위 등을 감안해 내부통제 거버넌스 구축, 직무분리 의무 등을 합리적으로 차등화
  - \* (대금결제업 이상) 전사적 내부통제, (결제대행업 이하) 핵심업무 내부통제, 직무분리 등 완화
- ④ (건전성 규제) 이용자 보호 강화 및 ICT 융합이라는 전자금융업의 특성을 고려, 은행·보험 등 일반 금융업권과 유사한 건전성 규제를 합리화
  - \* 최소자본금 인하 및 영업규모별 차등, 충전금 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 합리화 등

# 3. 진입규제 합리화: 최소자본금 인하 및 Small License

- □ (자본금 인하)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 등이 전자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<u>최소자본금 규제를 합리화</u>
  - 해외 주요 국가도 직접 여·수신 업무 등을 영위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본금 기준을 낮게 규정
    - \* (영국) 전자화폐업 4.5억원, (미국) 자금이체업 3억원, (EU) 지급지시전달업 0.7억원 등
  - 이용자 자금 보호의무 신설, 전자금융사고 책임보험 가입한도 상향(後述) 등을 통해 신규 사업자에 의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



- **종합지급결제사업자**의 **최소자본금**은 신용카드사 수준으로 설정
  - \* 예대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, 인터넷전문은행(250억원)보다 낮게 설정
- □ (Small License) 영업규모에 따라 자본금·등록 등 특례를 부여하되, 영업 확장시 자본금 등을 상향 적용(Sliding Scale 방식)
  - ▶ 분기별 거래액 100억원, 30억원 이하 → 최소자본금을 1/2, 1/4로 인하
     \* (영국) 분기별 거래액 약 120억원 이하인 전자금융업자에 특례 적용
- □ (진입방식 합리화) 이용자 자금을 보유하며 송금 업무를 하는 자금이체업은 허가제로 운영(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)
  - 그 외 업종은 **등록제**로 운영하되, 이용자 보호 및 금융보안 등을 위해 부가조건 부과가 가능한 조건부 등록제를 도입

# 4. 소액 후불결제·충전한도 상향 등 영업가능범위 확대

# (1) 소액 후불결제 기능 부여

- □ (필요성) '계좌 기반의 선·직불 결제'를 보완하는 '<u>신용 기반의</u> 후불결제' 방식의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통해 국민 편의를 제고
  - ① (포용성) 사회초년생, 주부 등 금융소외 계층(Underbanked)의 디지털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이력 축적에도 기여
    - 통신과금서비스 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신용카드 미소지자와 가맹점을 포용하여 수수료, 외상매출 부담 등을 크게 경감
  - ② (혁신성) <u>비정형·비금융 데이터(Alternative Data)</u> 등을 활용하는 새로운 플레이어를 통해 **후불결제 시장**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
  - ③ (편리성) 전자상거래\*시 일시적 자금 부족에도 거래의 신속 ·편리성을 보장하여 언택트 시대의 국민 편의를 제고
    - \* 전체 소비지출 대비 전자상거래 비율 : `18년 24.1% (OECD 국가 중 1위)
  - ④ (유니콘 육성) 글로벌 50대 유니콘(기업가치 1조원 이상) 중 후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4개사\*로 세계적인 추세
    - \* 알리페이(기업가치 1위), Klarna(스웨덴 12위), Kabbage(미국, 43위), Afterpay(호주, 47위)
- □ (내용) 대금결제업자의 충전금과 결제액간 차액(대금부족분)에 한하여 제한적인 소액 후불결제를 허용
  - ① (한도) 현행 <u>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수준(30만원)으로 우선 도입</u> 하되, 이용자 편의성 및 이용추이 등을 고려하여 추후 조정
    - ※ (참고) 국내외 소액 후불결제 유사사례
      - (국내)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한도 : 카드당 30만원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 : 통신사당 100만원(사업자 약관으로 한도 결정)
      - (해외) 미국·호주 등의 후불결제 한도 : 업체당 1천~2천달러

- ② (심사) 전자상거래 실적을 비롯한 비금융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심사를 통해 개인별 한도를 차등 부여
- ❸ (기능제한) 신용카드와 달리, 이자가 발생하는 <u>할부·리볼빙·</u> 현금서비스 등을 엄격히 제한
- ④ (사업자 한도) <u>직전분기 총 결제규모의 최대 50%내</u>로 후불 결제 규모를 제한하여 후불결제가 主업무가 되는 것을 방지
- ③ (건전성·영업행위 규제) <u>대손충당금 적립, 사업자간 연체정보</u> 공유\* 등 건전성 관리와 함께 이용자 보호체계도 확립
  - \* 연체 발생시 타 사업자의 소액 후불결제 이용을 제한

# (2) 선불수단의 충전한도 상향

- □ 대금결제업자의 <u>선불수단 1회 충전한도를 상향(2백만원\* → 최대</u> 5백만원\*\*)하여 전자제품·여행상품 등 결제 가능범위를 확대
  - \* `08.7월 선불전자지급수단 한도를 2백만원으로 설정한 후 상향 없이 유지
  - \*\* 이용자별로 거래실적 등에 따라 차등 부여 가능
  - 이와 함께, 1일 총 이용한도(1천만원)를 신설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보호장치도 마련(분실·도난시 피해 최소화 등)
  - ※ (참고) <u>자금이체업자의 이체한도(현행 200만원)는 선불수단 충전한도와 맞춰</u> 상향하되, 시행시기는 「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」등과 연계하여 추진

# (3) 금융규제 샌드박스 연계 등 동태적 규제개선

- □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<u>동태적</u> 규제개선과 연계되도록 반영
  - 신원확인 제도의 합리적 개선(신원확인·인증제도 개선과 연계)
  - ② 출금이체 동의 방식의 다양화(①·②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15건 지정)
  - \* (현행) 전화녹취, ARS 등 → (개선) SMS, 기존계좌 확인(1원 입금) 방식 등 추가
  - ❸ 금융업 영위와 무관한 영역의 망분리 합리화 검토(예:개발·연구 등)

# 제2과제 [이용자] 디지털금융 이용자 보호체계 확립

디지털 금융거래의 확대와 시장참여자의 증가에 따른 이용자 보호체계를 수립하고 금융회사·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을 강화

# 1. 디지털금융 이용자 자금 보호 강화

- □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하는 **이용자 자금**을 제도적으로 보호하여 간편결제·송금 등 디지털금융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
  - ① 이용자 자금을 은행 등 외부기관에 안전자산으로 예치·신탁 하거나 지급보증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화
    - 자금이체업을 하는 자는 이용자 자금의 100%, 대금결제업만 하는 자는 50% 이상을 보호토록 함(美·日과 동일 수준 보호)

### < 해외의 이용자 자금 보호·관리 방식 >

국가 방식	대상 이용자 자금의 범위	보관 방식
미그 이브	대금결제업 : 50%	① 외부기관 보관 또는
미국, 일본	자금이체업 : 100%	② 지급보증 보험 가입
중국	100%	중앙은행 예치

- ②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에 대한 주기적 보관·관리 규모 조정\*(Reconciliation)을 의무화
  - \* 이용자 자금과 외부기관 예치·신탁 규모를 비교하고 불일치시 보정
- **3** 이용자 자금관리를 위한 조직·인력의 구성, 위험관리 절차의 수립, 적정한 내부통제체계의 마련 등 관리 의무 부여
- 4 전자금융업자가 도산할 경우, 이용자 본인 자금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돌려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부여
- \* (英) 충전금에 대해 "이용자의 청구권이 다른 청구권에 우선함"을 법에 명시 ※ (참고)「전자금융거래법」개정 전 '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' 마련(3분기)

# 2. 금융플랫폼 등 영업행위 규율체계 마련

- □ 금융회사 등의 **영업 확장·경쟁**, AI 등 신기술 이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업시 행위 규제를 확립
  - 최근 증가하고 있는 <u>플랫폼 비즈니스, 타 금융 사업자와 연계</u> ·제휴 등에 적용되는 공정한 행위 규칙을 마련
  - 특히, 플랫폼 사업자 등이 AI·머신러닝·빅데이터 등을 비롯한 신기술 활용시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원칙\*을 제시
    - \* 구체적인 세부 기준 등은 하위법령,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
  - (오인방지) 금융상품·서비스의 제공, 연계·제휴시 UI(User Interface) 등을 통해 이용자가 명칭, 제조·판매·광고의 책임 주체 등을 <u>오인하지 않도록 할 것</u>
  - ② (인위적 개입 금지) 플랫폼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유리하도록 알고리즘 변경, 편향된 상품노출 등의 개입행위 금지
  - ❸ (자율선택 보장) 이용자는 희망하는 금융상품·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어야 하며, 계약 체결 전까지는 불이익 없이 중단 가능할 것

  - **⑤ (책임성 강화) 플랫폼**의 **AI·알고리즘**에 의한 **의사결정** 등에 대해 **이용자**의 <u>설명·질의·이의제기 등</u>이 제약되지 않는 **여건**을 마련할 것
- □ 업종별 특성에 따른 개별적 영업행위 규제도 도입
- **1 이용자 자금**에 대한 **이자지급 금지**(자금이체·대금결제업)
  - 단, 이용자 자금의 관리·운용으로 발생한 **수익** 등을 통한 **리워드 형태의 지급** 등은 가능
- ② 가맹점의 불법·부당행위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(대금결제·결제대행업)
- **❸ 이용자 자금**의 **직접 보유 금지** (지급지시전달업) 등

# 3. 금융회사 등이 책임지는 전자금융사고 범위 확대

- □ (내용) 디지털금융의 신뢰 확보를 위해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·전자금융업자의 책임(무과실책임)을 강화
  - 공인인증 폐지에 따른 인증수단 다양화, 충전한도 상향 등 자율성이 강화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한 책임성을 제고
  - 이용자 측도 전자금융사고의 예방에 함께 협력하도록 하여 공평하고 균형있게 손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함

(국정과제) "소비자가 안심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<u>전자금융</u> 사고 발생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"

- (금융회사 등 책임 확대) 접근매체 위·변조, 해킹 등 한정된 책임을 '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결제·송금(무권한거래)'으로 확대
  - 이용자가 거래를 허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<u>금융회사·</u> 전자금융업자가 입증토록 하여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
    - \* (EU, 美, 濠): 무권한거래(Unauthorized Transaction) 전반에 대해 원칙적 배상책임
  - (예) <u>'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부정결제'</u>는 현재 금융회사 등의 책임이 불명확하나, <u>제도개선시 책임범위에 명확히 포함</u>(단, 이용자의 고의·중과실이 없는 경우)

구 분	현 행	개 선
	■ <u>특정한 기술적 사고</u> 를 열거	■ <u>전자금융사고를 포괄적으로</u>
금융회사 등에	① 접근매체의 위·변조 (예: 공인인증서 복제)	<b>교정</b> ㅇ '피해자가 허용하지 않은
책임이	② 금융회사 서버 등을 해킹하여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 (예: 간편비밀번호 획득)	결제·송금' (무권한거래)
부과되는 사고	③ 전자적 전송·처리의 오류	
	→ 이용자가 상기 사고유형에 해당함을 직접 주장·입증	→ 금융회사 측에서 피해자가 허용한 거래였음을 입증

- ② (이용자 보호 합리화) 전자금융사고시에도 금융회사 등이 면책되는 이용자의 고의·중과실 범위를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
  - 이용자에게 **과도한 책임을 부담**토록 하는 부분은 **개선\***하되 이용자의 **합리적 주의** 등 **사고예방 협력 노력** 등도 함께 고려
  - \* 예) '접근매체 누설·노출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경우'는 고의·중과실에서 제외

구 분	현 행	개 선
금융회사 등이	■ 이용자의 고의·중과실에 대해 약관에 규정한 경우	■ 이용자의 <b>고의·중과실</b>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
면책되는 이용자의 고의·중과실	① 인증서·OTP 등을 누설·노출 ·방치·제공·사용위임 ② 인증 관련 보안조치 불이행 등 (예: 보안프로그램 미설치)	■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이용자의 <b>전자금융사고 예방</b> <b>협력 노력<sup>*</sup></b> 등을 부과

<sup>\* (</sup>EU PSD2) 약관 준수, 전자금융사고 즉시 통지, 인증서 등의 안전한 보관의무 등

- ❸ (보험 실효성 확보) 금융회사 등이 의무가입하는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의 최소보상한도 상향(현 1~20억원, 업종·규모별 차등)
  - ※ (참고) 세부방안은 '금융분야 인증·신원확인 제도 혁신 TF' 결과 등을 반영하여 확정·발표할 예정('20.3분기 중)

# 4. 합병・영업양도 등 기준 마련

- □ 전자금융업자의 합병·영업양도 등이 활발해짐에 따라, 이에 대한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절차를 합리화
  - 원칙적으로 신고제로서, 이용자에 대한 사전 고지 등 이용자 보호와 디지털 금융거래 질서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규정
  - ② 이용자나 거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, 합병·영업양도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이용자 보호 수준과 시장 안정성 등을 미리 검토
  - ❸ 사전 신고(인가)시 합병・영업양도 등의 필요절차(신규등록·등록취소)를 일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자금융업자의 부담 및 불확실성을 해소

# 제3과제 [인프라] 디지털 금융거래 기반 구축

핀테크의 성장, 디지털 금융거래의 활성화, Big tech의 금융업 진출 등에 따라 금융안정의 확보를 위해 법 체계 및 인프라를 개선

# 1. 오픈뱅킹 및 디지털 지급거래청산 제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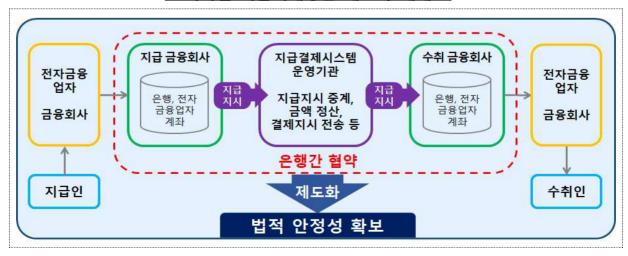
# (1) 오픈뱅킹의 법제도화

- □ (필요성) 금융인프라로서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지속·안정·확장성을 보장(현행 참가기관 협약으로 운영)
  - \* 오픈뱅킹 등록계좌 : (`19.10.) 124만개 → (`20.6.) 6,588만개
  - ※ (참고) IMF는 `19년 FSAP에서 오픈뱅킹 시스템의 안정성·신뢰성 확보를 위해 '법적 근거를 마련(Legal Foundation)'할 것을 권고
- □ (내용) 다양한 참가자에 개방하는 지급결제시스템(오픈뱅킹)을 지정하고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을 명확화
  - (참가기관) 은행, 핀테크 기업 외 제2금융권(상호금융·저축은행· 카드사 등)으로 참가기관 확대가 용이하도록 범위·자격을 규정
  - ② (보안규율) 금융인프라로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참가기관이 준수하는 보안·인증·표준화·정보보호 등의 기준을 제시
  - **③** (**협조의무**) 참가기관에 오픈뱅킹 이용에 필요한 **협조의무를 부과** 
    - ▶ **타 참가기관**의 **자금이체 지시** 등에 대한 **처리**
    - ▶ **자사 채널** 등에 비해 수수료, 처리 순서·시간 등에 있어 **차별 금지**
    - ▶ 참가기관간 **필요한 정보**의 **상호 제공 및 공유**
    - ※ (참고) **종합지급결제사업자**는 은행 등 **금융회사**와 같이 **금융결제망에 참가** 하여 계좌 기반의 독자적인 자금이체가 가능

# (2) 디지털 지급거래청산(Clearing) 제도화

- □ (필요성) 오픈뱅킹을 비롯한 <u>지급결제시스템과 그 운영기관(예</u> : 금융결제원)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결제 안정성을 확보
  - ① 기존 은행 중심의 지급결제시스템 (BOK-wire<sup>+</sup>, 소액결제시스템)의 변화
     → Big tech,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등으로 이해관계자가 다양화
  - ② 금융회사 외 Big tech, 핀테크 등의 청산의 외부·집중화를 통해 디지털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청산비용 절감
    - \* 중국은 알리페이 등 Big tech의 자체 청산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및 불투명성 해소를 위해 온라인 지급청산기관인 왕롄(Nets-Union) 도입(18.)
  - ❸ 디지털금융 성장에 따른 무자격·국외 청산업자 난립 예방
  - ◆ BIS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시장 인프라의 <u>법적 근거</u> 마련
    - ※ (참고) 국제결제은행(BIS)은 '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('12)'의 제1원칙으로 투명하고 명확한 '**법적 근거(Legal Basis)**'을 갖추어야 함을 제시
    - \* <u>자본시장 청산결제시스템(CCP)</u>도 국제논의 등을 반영, 기 법제화(「자본시장법」, `13.)
- □ (내용) 디지털 금융거래의 증가에 따라 <u>지급지시의 확인·중계,</u> 수취·지급 금액정산(Netting) 등에 전문화된 기관을 지정
  - 향후 글로벌 Big tech 등에 대해 디지털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청산의무 부과 및 결제시스템 내 관리 가능

### < 디지털 지급거래청산 제도화 체계 >



# 2. 금융분야 인증 · 신원확인 제도 개선

# (1) 금융분야 인증(Authentication) 제도의 합리적 정비

- □ (필요성) <u>공인인증 제도의 폐지</u>\*에 따라, 공인인증서를 전제로 하는 전자금융거래의 인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
  - \* '20.5.20일「전자서명법」개정안 국회 통과 → '20.12.10일 시행
- □ (내용) 전자금융거래의 편리·안전·보안성이 확보된 다양하고 혁신적인 인증수단이 개발·활용될 수 있는 체계 마련
  - (기술중립성) 특정 인증기술에 대한 차별 없이 다양한 디지털 新기술이 인증수단에 활용될 수 있는 법체계 마련
    - 인증서 난립 등에 따른 국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증 수단간 표준화·연계 방안 등도 함께 검토
  - ② (보안성) 국민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금융 분야의 특성을 고려, 보안성을 갖춘 인증의 기술적 요건을 제시
    - \*(예) 신원확인, 무결성, 부인방지기능 등「전자서명법」상 인증수단의 원칙 외에 새로운 디지털 기술 환경 등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원칙 마련
    - ※ (참고) EU의 「전자신원확인・인증법(eIDAS)」은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전자서명을 '적격・고급전자서명'으로 규정 →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기술이 통용 가능
  - ③ (위험 수준별 차등화) 일정 금액 이상 온라인 거래 등 <u>고위험</u> <u>거래\*시 강화된 인증방식</u> 이용을 의무화
    - \* 금융회사 등이 주기적 자체 리스크 평가를 통해 거래의 고위험 여부를 판단
    - ※ (해외사례) EU의「PSD2」의 강력한 이용자 인증(SCA, Strong Customer Authentication)
      - EU는 **고위험 거래**에 대해 이용자의 **지식·소유·특성** 중 2가지 이상의 요소를 입력하는 인증방식인 **2팩터 인증** 절차 적용 등을 의무화

# (2) 신원확인(Identification) 제도 합리화

- □ (**필요성**) <u>실명확인증표 중심<sup>\*</sup>의 거래 관행</u>이 디지털 新기술이 활용되는 대면·비대면 금융거래의 원활한 발전을 저해
  - \* `15년부터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(①신분증 사본, ②영상통화, ③접근매체 전달시 확인, ④기존계좌 활용, ⑤기타 중 2가지 확인) → 대부분 금융회사가 신분증 사본을 요구
  - 위조 신분증 등을 이용한 금융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발전된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신원확인 절차의 보완 필요
- □ (내용) 비대면·전자적 장치를 통한 금융거래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신원확인 방식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
  - 다만, 국민 재산 보호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확립이라는
     신원확인의 기본 원칙은 견지하여 제도의 안전성을 유지
  - (다양화) 기존 실명확인증표 확인 외에 안전·보안성이 확보되는 디지털 新기술 기반의 신원확인 방식을 확대 허용
    - 신기술 활용시 국민의 수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접근
      - \*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한 동태적 규제개선 등으로 추진 : ① 분산신원확인(DID), ② 안면정보 인식, ③ 신분증 이미지 대조 등
  - ② (차등화) 업종별(종합·이체·결제), 고객별(신규·기존)로 <u>신원확인</u> 수준을 합리적으로 차등화
    - \* 업종, 고객 및 그에 따른 거래행위별 금융리스크 수준이 상이한 점 등을 종합 고려
  - ❸ (법제화) 현행 유권해석·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전자금융거래의 신원확인 제도를 법제화하여 명확성 제고
    - ※ (참고) 세부방안은 '금융분야 인증·신원확인 제도 혁신 TF' 결과 등을 반영하여 확정·발표할 예정('20.3분기 중)

# 3. 전자금융거래법 적용대상 명확화

# (1) 국외 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

- □ (필요성) 국외 소재 사업자가 국내 이용자·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국경간 디지털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 근거가 미비
- □ (내용) 국내 이용자·가맹점·산업 보호를 위해 <u>국외 사업자의</u> 국경간 디지털 금융거래에 대해「전자금융거래법」을 적용
  - \* (유사 입법례)「자본시장법」,「공정거래법」,「전기통신사업법」등
  - 국외 사업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진입·영업규제를 차별화 하되, 무등록 · 무허가 사업자의 영업은 엄격히 규제

# (2) 새로운 형태의 전자금융거래 포섭

- □ 종전 '비대면 거래'에서 태블릿을 이용한 창구거래 등 '디지털 방식의 금융거래' 전반으로 전자금융거래의 범위를 확대
  - 금융보안 전반, 금융회사 배상책임, 약관, 분쟁처리 및 조정,
     거래기록 보존 등에 대해 이용자 보호 범위가 확장
  - ▶ (현행) 이용자와 금융회사간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비대면 금융거래 → (개선) 금융서비스의 업무처리 과정에 전자적 장치가 이용되는 거래

### < 전자금융거래의 범위 확장 >



# 4. Big tech의 금융업 진출 대비 관리체계 마련 추진

- □ Big tech의 지급결제 등 디지털 금융산업 진출이 <u>이용자 보호</u>, 금융안정 등을 저해\*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체계 마련
  - \* 고객 네트워크 및 빅데이터 기반 시장지배력 남용, 기존 금융회사와 과당경쟁 등
  - (외부청산 의무화) Big tech의 <u>외부청산을 의무화하여「지급</u>- 청산 결제」의 과정을 투명화
    - Big tech가 보유한 이용자의 충전금 등이 <u>내부자금화되는</u> 것을 막고 자금세탁의 위험도 예방
    - ※ (참고) BIS는 중국이 온라인 지급청산기관(왕롄)을 통한 청산 의무화를 통해 은행과 Big tech간 복잡하고 불투명한 관계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고 평가
  - ② (합병·영업양수 사전 인가) Big tech의 전자금융업 합병·영업 양수시 리스크 등을 심사하기 위한 <u>사전 인가제</u> 도입
  - ③ (이용자 자금 보호) Big tech에 <u>강화된 이용자보호 규제</u>를 적용하여 이용자 자금을 활용한 **과도한 사업 확장을 방지**
  - 4 (역외적용) <u>국외사업자에 대한 국내 진입·영업 규제</u>를 통해 글로벌 Big tech의 무분별한 영업을 엄격히 제한
- □ 한편, 글로벌 Big tech의 금융업 진출시 국내 금융회사, 디지털 기업(핀테크, Big tech) 등이 서로 <u>공정하게 경쟁</u>할 수 있도록
  - <u>규제차익(Regulatory Arbitrage) 방지</u> 측면에서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·Big tech 등에 대한 금융규제도 점검 후 개선
  - 국내 디지털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관한 규제의 합리화도 검토

# 제4과제 [금융안정] 디지털 금융보안 강화

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금융보안에 대한 관리·감독 체계를 확립하고, 민간·공공을 아우르는 사이버 리스크 통제 체계를 정립

# 1. 디지털 리스크 관리·감독 선진화

- □ 디지털 금융보안에 대한 감독·검사의 전문성을 높여나가면서 기존 사후적발 중심에서 사전예방으로 감독방향을 전환
  - \* 정부는 금융보안의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(Principles-based approach), 결과 달성과정은 금융회사·전문가 등의 자율성을 존중하고, 책임성은 강화
  - 금융회사 등에 AI·클라우드 등 **디지털 신기술**을 활용한 서비스에 대한 **금융보안 가이드**를 미리 제시
  - 사후적발시에도 <u>임직원 신분 제재 대신 기관 금전제재</u> 등을 **강화**하여 금융회사 등의 **자율적인 보안역량 확충**을 유도
- □ 클라우드 컴퓨팅 등 금융의 IT아웃소싱 확대 등에 따라 나타나는 제3자 리스크(Third Party Risk)에 대한 관리·감독을 강화
  - 클라우드 사업자 등 **주요 전자금융보조업자**(Third Party)에 대해 **직접 감독・검사**를 할 수 있는 **법적 근거 마련** 
    - \* 현재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등을 통한 간접감독, 자료제출 요구만 가능
  - IT아웃소싱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보조업자간 합리적 책임 분담을 위해 <u>업무위탁 규제를 정비</u>
- □ 금융위의 **금융회사·전자금융업자**, **금융인프라** 기관 등에 대한 금융보안 관련 조치명령권을 도입
  - \*(유사 입법례)「자본시장법」,「보험업법」,「신용정보법」등에서는 旣 도입
  - **사이버 공격, 대량의 정보유출** 등 위기 발생시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**규제의 실효성**을 확보

# 2. 금융보안 관련 민간 거버넌스 강화

- □ 일상적 업무부터 고도의 의사결정까지 **전사적**(全社的) **관점**에서 **보안관제**를 고려하도록 **조직·내부통제체계** 등을 선진화
- (계층적 방어체계) 현업·정보화(IT) 부서, 정보보호·준법감시,
   내부감사의 3단계에 걸친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체계\*를 구축
  - \* 3선방어체계(Three Lines of Defence): 영국 FSA(Financial Services Authority)가 조직의 리스크 관리·통제를 위해 고안한 조직모델로 다수 금융권, 정부기관 등에서 채택
- **②** (CISO 권한 강화) 정보보호최고책임자(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)의 <u>주요 회의 참여, 전사적 리스크 점검</u> 등 권한 확대
  - ※ (현행) CISO는 정보보호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해킹, 사이버공격 등에 대응 (개선) 금융보안 관점에서 현업부서의 FDS업무, IT업무 등에도 관여·점검 가능
- ❸ (이사회 책임 강화) 중요 금융보안 사항의 이사회 보고 등을 의무화하여 이사회·CEO의 금융보안 관련 책임을 확립

# 3.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금융산업의 안전한 디지털 전환 지원

- □ 코로나19 등에 따른 위기관리의 일상화를 고려해 <u>업무지속계획</u> (BCP, Business Continuity Plan)\*을 강화
  - \* 금융회사 등이 재해 발생시에도 핵심 업무 기능을 계획된 수준 또는 중대한 변경 없이 지속할 수 있도록 전사적 대응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 이행하는 것을 의미
  - 금융회사·전자금융업자 뿐만 아니라 **디지털 지급거래 청산기관** 등 금융인프라 기관에도 확대 적용
- □ 기술·근무환경 변화 등에 맞지 않는 금융보안 규제는 현대화
  - \* 영업규모, 신기술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직무분리, 최소 전산인력(5명) 요건 등 개선

- □ 업무지속계획(BCP), 거버넌스 강화 등을 전제로 신기술 연구개발, 재택근무 관련 망분리 규제\*의 합리화 방안을 지속 모색
  - \* 사이버공격, 정보유출 등 방지를 위해 통신회선을 업무용(내부망), 인터넷용(외부망)으로 분리
  - 망분리 원칙의 전환은 사이버위협 수준, 네트워크 연계성이 높은 우리 금융의 특수성<sup>\*</sup>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접근
    - \* 금융회사간 금융공동망을 통한 높은 연계성으로 실시간 자금이체 등이 용이 [英(`08.~), 日(`18.~) 등을 제외한 美國 등 주요국은 실시간 이체 미시행]
  - ①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확대로 망분리 예외를 임시로 허용(비조치의견서) → 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정비, POST 코로나 재택근무 가이드 마련 등
  - ② 인터넷전문은행의 '금융기술연구소'를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하고, 망분리 특례를 부여하여 디지털 신기술의 연구·개발을 지원

### ※ (참고) 금융분야 망분리 도입 배경 및 현황

- '13년 대규모 전산망 마비 사고를 계기로 **'공공 부문'**의 **망분리 제도**를 **'금융 분야**'에 **도입** → 망분리 이후 **금융권 보안사고**는 **지속 감소** 
  - \* '17년 전세계적 랜섬웨어(악성코드 일종) 피해에도 국내 금융권 피해는 없었음

# < 망분리 방식별 비교 >

	구 분	단일망 사용(망분리X)	논리적 망분리	물리적 망분리
	개 념	1대의 PC를 업무망과 인터넷망에서 <b>자유롭게 사용</b>	1대 PC를 각각 업무용 및 인터넷용으로 S/W방식 분리	2대 PC를 각각 업무용 및 인터넷용으로 물리적 분리
	구 성	네부망 시스템 외부 해킹에 취약 마프를 C 사용자 PC	내부망 의부망 의부망 의부망 사용자 PC	대부망 외부망 의부망 해킹 유입경로 완전차단 대부망PC 외부망PC 외부망PC 사용자 PC
_	비고	외부 해킹위험 높음	외부 해킹위험 존재	외부 해킹 경로 차단

※ **금융보안 규제(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) 정비 IF** 운영 및 개선방안 마련('20.4분기 중)

# 4. 금융분야 사이버 안보 및 재난대응 관리체계 구축

- □ 금융안정 확보 및 국민 재산보호라는 **금융보안의 특수성**을 감안, **민간・공공**을 아우르는 **금융분야 위기관리 체계를 확립** 
  - ① (위기 대용체계) 예기치 않은 재난 상황에서도 금융 시스템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민간·공공의 금융분야 방어체계 구축
    - ▶ (공공) 금융분야 사이버안보(Cyber Security) 및 재난대응에 관한 기본적 사항<sup>\*</sup>을 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 명시
      - \* ① 금융보안 재난대응 체계 정립, ② 금융분야 국가사이버 위기관리의 특수성 명시
    - ▶ (민간) 금융보안원의 법률상 지위 및 공적 역할\* 등을 명확화 → 금융 회사와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자율보안을 지원하는 기능 강화
      - \* ① 침해사고 대응, ② 금융ISAC(Information Sharing & Analysis Center), ③ FDS정보공유 등
    - ▶ (민·관 협력) 금융 인프라 기관 등에 대한 민간 · 공공의 합동 위기대응 훈련을 정례화하고, 위기대응 매뉴얼을 정비
  - ② (디지털금융 협의회) 디지털금융의 이해관계 조정, 금융보안, 신기술 표준화 등을 위한 협의체(法定)를 구성·운영
    - 학계·업계 등 민간 참여로 전문성을 제고하고, 민·관, 금융권 ·핀테크·Big tech 등이 함께하는 소통·협력의 장을 마련

### <u>< 디지털금융 협의회 구성(안) ></u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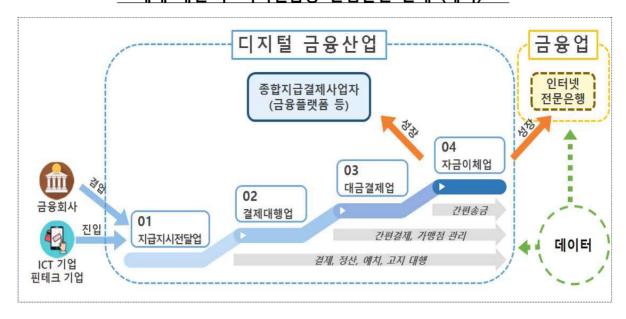


※ 법 개정 전이라도, 디지털 금융혁신과 금융보안 현안 과제에 대응하는 「디지털금융 협의회」구성·운영을 추진 ('20.4분기 중)

# Ⅲ. 기대 효과

- ① 디지털 금융산업의 단계별 발전과정을 로드맵으로 제시하여 디지털뉴딜 등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을 뒷받침
  - MyPayment\*, Small License 도입 등을 통해 혁신적 핀테크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업이 활발해지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
    - \* 핀테크 기업 외에도 e-Commerce, MyData업체, 카드사 등이 진출 추진 중
  - ② 소액 후불결제 허용, 선불수단 충전한도 상향, 인증산업 육성 등으로 핀테크 기업 등의 신사업 창출 및 도전 역량을 제고
  - ③ MyPayment, 소액 후불결제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도입으로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경쟁적 협력(Coopetition)이 확대
    - 업권별 칸막이나 영역 다툼이 아닌 균형·확장적 성장전략을 통해 디지털 금융시장의 외연이 확장되고 해외진출도 증가
  - 4 디지털금융 생태계 조성으로 중소 금융회사, 핀테크 기업 등 에게도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여 금융시스템의 공정성 강화
  - **⑤** 데이터, 클라우드, 보안 등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을 통해 융합신산업 등 실물 부문의 혁신성장에도 이바지
- ② 4차 산업혁명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디지털 금융산업의 혁신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금융 유니콘 출현 유도
  - **종합지급결제사업자 지정을 통해 디지털 금융플랫폼** 등 **핀테크 기업의 유니콘 성장** 및 해외진출 활성화 가능
    - [英 Revolut 사례] 환전 핀테크 기업에서 시작하여 선불업, 간편송금업으로 확장해 핀테크 유니콘으로서 은행업까지 진출

### < 체계 개편 후 디지털금융 산업발전 단계 (예시) >



- ③ 디지털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디지털금융의 효율성·안전성이 향상되어 국민들께서 혁신의 혜택을 체감하고 편의가 증진
  - 1 MyPayment,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을 통해 계좌 기반 서비스 등 종합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One-stop으로 영위 가능

(사례①: MyPayment + MyData) 하나의 App을 통해 모든 금융자산의 조회를 통한 포트폴리오 추천 뿐만 아니라, 포트폴리오에 따른 자산 배분(이체)까지 가능

(사례②: 종합지급결제사업자) 단일 플랫폼에서 간편결제·송금 뿐만 아니라 자체계좌에 기반한 급여 이체, 카드대금·보험료 납입 등 결제서비스 일괄 제공

- ② 편리하고 안전한 신기술이 인증·신원확인 분야에 활용됨에 따라 디지털금융의 접근·신속성이 향상
- ③ 이용자 중심의 디지털 금융보안체계 확립을 통해 사이버 안보를 넘어선 인간안보(Human Security)를 위한 국제 논의를 선도
- 4 소액 후불결제, 인증·신원확인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자발·창의적 혁신서비스가 창출되고 혁신적 포용금융을 구현

- 4 오픈뱅킹, 청산제도 등 BIS 등 국제 기준에 맞는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을 통해 디지털금융의 확장·안정성을 제고
  - 디지털 지급거래 청산의 제도화 및 이용자 자금 보호 등을 통해 디지털금융의 투명성을 확보
  - ② 역외적용 규정 마련, 진입규제 정비 등 글로벌 Big tech의 국내 금융업 진출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확보
  - ❸ 금융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금융 인프라 Package (오픈뱅킹·청산제도·인중·보안 등)의 해외 수출도 기대

# Ⅳ. 향후 추진계획

- □ `20년 하반기 중, 「전자금융거래법」 개정 추진
  - '20년 3분기 중「전자금융거래법」개정안 국회 제출
  - 법 개정 전 실시가능한 과제는 대책 발표 후 우선 추진
    - \* 시행령·감독규정 개정, 행정지도(가이드라인),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
  - 이번 방안의 세부·연관 과제는 전문가·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하반기 중 구체화된 방안을 순차 발표
    - ▶ 금융분야 인증·신원확인 혁신방안(3분기) ▶ 디지털 금융보안 종합방안(4분기)
    - ▶ Big tech 규제혁신 및 관리감독체계 검토 등
  - ➡ 국민들께서 이용자보호와 보안이 완비된 금융플랫폼을
    통해 디지털 금융혁신을 직접 체감하게 되고
    - '디지털금융'과 '데이터경제'의 동반 발전을 통해
       "우리가 표준이 되고, 세계가 되는" 선도형 디지털경제로
       더욱 빠르게 나아갈 것으로 기대